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1,102,204	21,033,066
일반회계	608,793,820	18,263,815
특별회계	92,308,384	2,769,252
공기업특별회계	71,272,934	2,138,18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555,326	916,6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717,608	1,221,528
기타특별회계	21,035,450	631,064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425,120	42,754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514,438	15,433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16,374,306	491,229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1,895,586	56,868
지하수특별회계	826,000	24,7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63,84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